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의 관광 시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99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의 관광 시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2025. 11. 28.

다. 회 부 일: 2025. 12.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의 관광 시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u>협조</u>) (생략)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u>책무</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다. 검토사항

현행법은 정부가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 향상,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 발전 도모를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제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지역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규정한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여, 관광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도형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과 의무의 주체이므로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